

제7조(지원절차)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편입학)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.

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.

제7조의3(재입학) 제8조, 제11조, 제14조,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① 제36조 제1항에서 정의한 논문제출시한을 연장 받은 자가 논문제출시한만으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

② 제13조의2, 제41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

제4장 등록, 휴학, 제적, 복학

제8조(등록 및 등록금)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통합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,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<삭제>

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. 단,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.

제9조(등록생의 권한)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,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.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,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) ① <삭제>

②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관계법령 및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단, 징계,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되지 아니한다.

제11조(휴학) ① 한 학기의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(4학기),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